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법경찰관의 성폭력범죄 사건송치 의무 등〉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6호)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사법경찰관의 성폭력범죄 사건송치 의무	5
3. 가지번호가 있는 조 인용에 관한 정비	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6. 7. 29.

다. 회 부 일 :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그 외 현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가지번호가 있는 조의 인용에 관련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4. (생략)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2조(정의) ① ----- ----- -----.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사법경찰관의 성폭력범죄 사건송치 의무

가.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¹⁾의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⁴⁾

□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들 사건의 실체를 보다 충실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다면,

1) 성폭력범죄는 2024년 기준 36,180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70.6건이 발생하였음(검찰청)

2)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을 기재함. 이하 같음.

4) 이와 같은 제도는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본회의의결 2020. 1. 13. / 공포 2020. 2. 4.)에 따라 신설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외에도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⁵⁾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는⁶⁾ 등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현재 가정폭력범죄⁷⁾ 및 아동학대범죄⁸⁾의 경우 이미 개정안

5)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 유사하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유사한 취지에서 스토킹범죄에 관한 사건송치 의무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7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에 관한 사건 송치 의무를 각각 규정하는 개정안⁹⁾¹⁰⁾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 관한 사건송치를 규정하는 개정안¹¹⁾이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에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임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9)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8호)

10)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29호)

1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31호)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전건송치 도입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범죄는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다양하여 특정 죄명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및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3. 가지번호가 있는 조 인용에 관한 정비

가.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함.
 - 지난 2020년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14조와 제15조 사이에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신설되었음.¹²⁾
 - 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정의 규정 개정 없이 자연스럽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음.
 - 그런데, 가지번호가 있는 조를 포함하여 인용하는 경우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일일이 특정하여 기술하는 것이 법제 과정상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음.¹³⁾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지번호가 있는 조인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별도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경우 이들 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2012년 전부개정(2013. 12. 19.) 이후 개정된 바 없음

1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84.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무부는 현행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은 문언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어 보이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9

※ 참고자료: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 성폭력범죄는 2024년 기준 36,180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비는 70.6으로서 인구 10만명 당 70.6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

(단위: 건, 발생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30,105	32,898	41,433	38,698	36,180
발생비	58.1	63.7	80.5	75.4	70.6

자료: 검찰청, “2025 범죄분석”, 2025

- 2024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41.1%),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 통신매체이용음란(16.2%), 강간(15.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현황 >

(단위: 건, %)

구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허위 영상물 편집·배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계
'20년	5,825 (19.3)	14,486 (48.1)	102 (0.3)	9 (0.0)	574 (1.9)	274 (0.9)	5,005 (16.6)	697 (2.3)	2,070 (6.9)	906 (3.0)	32 (0.1)	125 (0.4)	30,105 (100.0)
'21년	5,737 (17.4)	13,156 (40.0)	74 (0.2)	4 (0.0)	558 (1.7)	315 (1.0)	5,686 (17.3)	548 (1.7)	5,079 (15.4)	923 (2.8)	260 (0.8)	558 (1.7)	32,898 (100.0)
'22년	6,177 (14.9)	14,908 (36.0)	100 (0.2)	4 (0.0)	516 (1.2)	254 (0.6)	6,082 (14.7)	622 (1.5)	10,605 (25.6)	1,150 (2.8)	171 (0.4)	844 (2.0)	41,433 (100.0)
'23년	5,808 (15.0)	15,334 (39.6)	87 (0.2)	6 (0.0)	453 (1.2)	150 (0.4)	5,718 (14.8)	762 (2.0)	8,026 (20.7)	1,187 (3.1)	173 (0.4)	994 (2.6)	38,698 (100.0)
'24년	5,492 (15.2)	14,870 (41.1)	79 (0.2)	3 (0.0)	367 (1.0)	126 (0.3)	6,101 (16.9)	826 (2.3)	5,868 (16.2)	1,030 (2.8)	565 (1.6)	853 (2.4)	36,180 (100.0)

자료: 검찰청, “2025 범죄분석”, 2025